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합562306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구태형

피고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기주, 오경빈

변론 종결 2018. 12. 14.

판결 선고 2018. 12. 21.

주 문

1. 피고는 D[E생]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8. D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발행의 보통주 6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3,0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D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 발행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D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 3,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은 피고에게 있어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은 피고가 아닌 D이므로, 피고가 D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이며,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피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의 일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주가가 오르지 않자 2016. 11.경 폭력조직원을 동원하여 "1주당 5,000원에 매수해 가든지, 아니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장내에 처분하든지, 두 가지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라", "주가를 무조건 5,000원까지 끌어 올려라"는 취지로 D을 협박하였다. 당시 피고는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2016. 8. 30.자로 그 공시까지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일시에 처분할 경우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거나,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부득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식은 1주당 2,755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그 2배에 가까운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의 궁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8. 30.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하기로 결의한 사실, 2016. 11.경 피고의 주가가 2,500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직원인 F이 2016. 11.경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D에게 피고의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 4, 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D은 2016. 5.경 피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12. 30.에도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공박 상태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큰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③ 피고 또는 D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가 상승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상범

판사이재경

판사서청운

별지